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9
----------	------

2024년 4월 3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우형찬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경우, 실명제 조항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있어 원문 형태가 아닌 요약본 혹은 비공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이에, 정책연구용역 공개 시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해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성과점검 결과 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매년 추진되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 및 합리적 용역 추진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실명제에 대해 신설함 (안 제15조)

나.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 비공개 사유 및 시점 적시 조항을 규정 (안 제17조제2항)

다.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에 대해 신설함 (안 제19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29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실명제, 연구 결과 및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관부서 공무원(과장,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정책연구용역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게재하는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로, 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¹⁾를 의미합니다.
 - 또한 동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²⁾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³⁾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⁴⁾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1페이지.

○ (의의):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23. 6. 27.>

③ 생략

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는 정책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 수행기관, 계약정보(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 등은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만 포함되어 있고, 이 또한 주관부서의 모든 담당자 실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따라서 안 제15조에서 정책연구용역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모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15조제1항은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는 문서 및 공개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정책연구용역 실명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정책실명제’와 관련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실명 게재의 목적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성격이 크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15조제1항은 실명을 명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문서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조례는 정책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책연구과

4)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별로 ‘주관부서의 장’ 을 ‘과제담당관’ 으로 지정하고 있고,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실명 게재와 관련된 동 조 제1항에 있어서도 주관부서의 장(과제담당자)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항)

- 안 제17조제2항은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 에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5)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6)에 따라 다른 법령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

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을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할 경우 등에는 다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연구용역결과를 비공개하는 연구과제에 한해 이미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 등을 적시하고 있는바,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정책연구용역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7)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절차(과제 및 연구자 선정 타당성, 연구 결과 평가의 적정성 등) 및 연구 결과(연구 결과 등록 및 공개의 적정성, 연구 결과 활용의 적정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검 결과는 이

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후 정책연구용역 시행 및 예산편성 등에 반영되게 됩니다.

- 다만 현재 동 규정에서 성과점검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될 뿐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는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동 조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용역 절차 및 결과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 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바, 안 제19조 신설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088, 2024. 4. 15.).

I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안 제15조제1항의 “주관부서 공무원은” 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29
----------	------------

제안연월일 : 2024년 4월 3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5조제1항은 실명을 명시해야 하는 문서 및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주관부서 공무원은” 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주관부서 공무원은” 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 명제) ① <u>주관부서 공무원</u> <u>원은</u> 실명을 명시하여 정 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 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 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 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 명제) ① <u>과제담당관은</u> <u>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u> <u>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u> 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 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u>제15조</u> (생 략)	<u>제16조</u> (현행 제15조와 같 음)	제16조 (개정안과 같음)
<u>제16조</u> (정책연구용역 결과 의 공개) (생 략)	<u>제17조</u> (정책연구용역 결과 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	제17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p><u>제17조</u> (생략)</p> <p>〈신설〉</p>	<p>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p> <p><u>제18조</u>(현행 제17조와 같음)</p> <p>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 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 (개정안과 같음)</p>
<p><u>제18조</u> (생략)</p>	<p><u>제20조</u>(현행 제18조와 같음)</p>	<p>제20조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5조 (생 략)</p> <p>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생 략)</p> <p><u><신 설></u></p> <p>제17조 (생 략)</p> <p><u><신 설></u></p> <p>제18조 (생 략)</p>	<p>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현행 제16조 제1항의 부분과 같음)</p> <p>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p> <p>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p> <p>제19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현행 제18조와 같음)</p>